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(관광진흥법 시행규칙)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(법률 제20488호, '24.10.22. 공포/ '25.10.23. 시행)됨에 따라,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 (안 제64조제1항 및 별표 21 삭제)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.

별표 21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) ① <u>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은 별표 21과 같다.</u> ② · ③ (생략)	제64조(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) <u><삭 제></u> ① · ②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